

2020년도 제148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

I. 회의 개요

- 일 시: 2020. 7. 22.(수요일), 10:30
- 장 소: 한국저작권보호원 회의실
- 참 석 자: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제2분과위원회 위원 4명 참석
 - 심의위원: 김경숙(분과위원장), 박성호, 박정인, 오영주 위원
- 회의 진행순서 및 안건

1. 개회선언 및 인사말씀	분과위원장
2. 전자(제2020-140회)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분과위원
3. 안건상정	분과위원장
<의결안건> ※ 안건 검토 보고: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성원영 전문위원	
·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 권고 심의	
4. 폐회선언	분과위원장

II. 회의내용 및 결과

1. 의결안건

-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 주요내용: 온라인상의 불법복제물등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 2,942건(안건번호 제2020-74994호~76122호)
 - 회의결과: 안건번호 제2020-74994호는 민원인이 운영하는 쇼핑몰의 제품 사진을 이용하여 동일 제품을 판매한 사안임. 해당 제품 사진이 저작물로서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의문인 점, 심의대상 게시물이 해당 제품 사진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불명확한 점 등을 고려하여 시정권고를 부결함.
 - 안건번호 제2020-74995호~75014호는 방송사업자 등의 복제권, 전송권, 동시중계방송권을 침해하는 기기를 판매하는 게시물을 전송한 사안임. 불법 스트리밍 기기 판매 행위가 저작권 등 침해방조행위에 해당하고 심의대상 게시물은 저작권을 침해하는 정보로서 시정권고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 불법 스트리밍 기기 판매자 및 구매 희망자들에게 저작권법 준수를 안내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시정권고를 가결함.
 - 그 외에 불법복제물등에 해당하는 심의안건 게시물 2,845건은 삭제 또는 전송중단의 시정을 권고하고 복제·전송자에 대하여는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가결함.

Ⅲ. 회의 의사록

1. 개최선언

- 김경숙 분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0년 제148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개최를 선언함.

2. 전차(제2020-140회)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 김경숙 분과위원장: 전차 회의록 공개여부에 관해 의견을 구함.
- 성원영 전문위원: 전차회의록 제1호 안건인 시정권고 심의 회의록 6쪽에 저작물명, 7쪽에 저작물명과 온라인 서점명, 9쪽에 영업소명, 10쪽에 밴드명이 특정될 수 있는 부분의 공개 여부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람. 참고로 비식별 처리해야 할 부분은 취소선으로 미리 표시해 두었음.
- A 위원: 저작물명, 온라인 서점명, 영업소명과 밴드명이 특정될 수 있으므로 비식별 처리하고 나머지 부분은 공개해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됨.
- B 위원, C 위원, D 위원: 위원님 의견에 동의함.
- 성원영 전문위원: 제2호 안건에 대한 회의록이 공개될 경우 저작권 침해 사이트를 이용하는 방법을 알려주게 되므로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회의공개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제1항 제2호와 제5호에 따라 전체 비공개하고 쪽수만 기재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음.

- 김경숙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전차 회의록에 대해 이상 없음을 확인하였고, 시정권고 심의 회의 부분에서 저작물명, 권리자명, 영업소명과 영업소를 추측할 수 있는 홍보 문구를 비식별 처리하여 공개함. 구글 검색결과 제한 심의 회의 부분인 11쪽~17쪽은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회의공개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제1항 제2호와 제5호에 따라 비공개함.

3. 안건상정

-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 성원영 전문위원: (심의안건의 저작물명, 저작권자 등 목록을 제시하면서)심의위원님들께서는 PC에 접속하여 금일 심의안건의 저작물명, 저작권자 등 목록을 직접 확인해 주시기 바람. 금일 심의대상의 주요 권리자는 '이십세기폭스코리아(주)', '일본 후지 TV', '미국 FOX', '넷플릭스', '일본 NHK', '채널A', '일본 NTV', 'tvN', '미국 CBS', '중국 youku', 'TV조선', '(주)키다리아엔티', '(주)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주)한글과컴퓨터', 'Adobe System Inc.' 등임. 이러한 권리자를 위하여 현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 등에 관여하고 있거나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지정된 위원은 저작권법 시행령 제67조의4 및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규정 제11조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됨. 위원님들께서는 제척 사유 해당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람.
- B 위원, C 위원, A 위원, D 위원: 해당 없음.
- 김경숙 분과위원장: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람.

- 성원영 전문위원: 금일 심의안건은 55개 온라인서비스 이용자들이 게시한 2,942건의 복제물에 대한 시정권고 심의임. 안건번호는 제20-74994호~76122호임. 관련 법령과 심의 기준은 검토보고서로 대신 하겠음.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0-74994호는 실명의 민원인이 신고한 건임.

(심의대상 게시물에 직접 접속해서 보여주면서)민원인은 패션잡화등을 판매하는 쇼핑몰 '◆◆◆◆'를 운영하는 자임. 민원인은 심의대상 게시물 작성자인 '♀♀' 사이트 판매자가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 민원인의 제품 사진 등을 무단 이용했다고 주장함.

(민원 신고 내용을 제시하면서)민원인은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함. 다만, 사업자등록증은 저작권 권리관계를 나타낸 것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만 해주시기 바람.

- B 위원: 민원인은 '♀♀'을 상대로 신고를 한 것인지?

- 성원영 전문위원: '♀♀' 내에서 판매 중인 게시물에 대해 신고한 건임. 하지만 시정권고를 가결하게 되면 시정권고의 직접 상대방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인 '♀♀'이 됨.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와 관련 판례를 제시하면서)남부햄 사건'에서 대법원은 "제품 자체를 충실하게 표현하기 위한 사진과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투여된 이른바 '이미지 사진'으로 나눈 다음 후자에 대해서만 사진저작물성을 긍정하였음.

고주파 수술기를 이용한 수술 장면 및 환자의 환부 모습과 치료 경과 등이 담긴 사진을 무단 이용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피사체를 중앙 부분에 위치시킨 채 근접 촬영함으로써 수술 장면 등을 충실하게 표현하여 정확한 정보를 전달한다는 실용적 목적을 위해 촬영된

원고의 사진들은 저작권법상의 사진저작물로서 보호될 정도로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인정되는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여 저작물성을 부정하였음.

대법원은 광고용 책자에 무단 게재된 광고사진과 관련하여 위 사진들 중 음식점의 내부 공간을 촬영한 사진은 누가 찍어도 비슷한 결과가 나올 수 밖에 없는 사진으로서 사진저작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나, 찜질방 내부 전경 사진은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을 인정할 수 있는 사진저작물에 해당한다고 하였음.

- 김경숙 분과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모니터링 자료, 심의대상 게시물,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바탕으로 안건번호 제2020-74994호에 대해 의결해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에 직접 접속하여 확인함)

- C 위원: 심의대상 게시물의 제품 사진은 제품 판매를 위해서만 이용되는 것으로 심의대상 게시물이 해당 사진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불명확하다는 점에 비추어 시정권고를 부결하는 것이 타당함.

- D 위원: 시정권고가 이루어질 경우 제품 판매자의 영업 활동이 제한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심의대상 게시물은 시정권고의 대상으로 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으로 부결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됨.

- B 위원: 위원님들 의견에 동의하는 바임.

- A 위원: 같은 생각임.

- 김경숙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0-74994호는 게시물에 대해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는 것에 대해 부결함.

- 성원영 전문위원: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 안전번호 제2020-74995호~75014호는 '♣♣♣♣♣♣', '♡♡♡♡♡', '♣♣♣♣♣', '◆◆◆◆' 등 오픈마켓 또는 구매대행 사이트에서 '▶▶▶▶▶'라는 중국산 불법 스트리밍 기기를 판매하고 있는 사안임. 해당 안전은 1분과 위원회에서 심의를 진행하여 시정권고를 가결하였음.

해당 사안은 방송사, 구체적으로는 '□□□□□'가 민원을 제기하였음. '▶▶▶▶▶'를 구매해서 설치할 경우 우리나라 방송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방송을 시청할 수 있음. 다만, 동북아권 방송의 경우 지리적으로 가까우므로 스트리밍이 원활하지만, 유럽의 경우 시차가 발생하여 스트리밍이 다소 지연됨.

해당 기기는 여러 개의 방송을 합법적으로 수신한 다음에 다시 재송출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저작권법은 암호화된 방송 신호가 정당한 권한에 의하여 복호화된 경우 그 사실을 알고 그 신호를 방송사업자의 허락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공중송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해당 기기는 방송물을 실시간으로 제공할 뿐만 아니라 VOD 서비스로 저작물을 제공하고 있음. 하지만, 저작물이 해당 기기 내부에 저장된 것은 아님. 이전에도 해당 기기와 유사한 '■□■□' 사건이 존재하였고, 이에 관해 ●●●●●●, ◆◆◆◆, □□□□□가 소송을 제기한 바 있음. 검토보고서의 판결을 참고해 주시기 바람.

- D 위원: 해당 기기의 가격이 얼마인지?

- 성원영 전문위원: 판매처마다 가격이 천차만별임. 10만 원대부터 60만 원대까지 다양한 가격대에 판매되고 있음.

- D 위원: 각국의 방송을 실시간으로도 볼 수 있고, 일부 콘텐츠는 VOD로도 볼 수 있는지?

- 성원영 전문위원: 그러함.

- B 위원: 영국의 'TVCatch up' 사건과 유사한 것 같음.

- 성원영 전문위원: 그러함. 해당 기기의 경우 저작권침해 간주 조항인 제124조 1항 1호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로 될 물건을 대한민국 내에서 배포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행위"에 해당할 것임.

'▶▶▶▶▶'를 디지털포렌식센터 □□□ □□이 직접 시연해보도록 하겠음. ㉠㉠㉠에서 제공하는 실시간 방송과 '▶▶▶▶▶'의 ㉠㉠㉠ 채널 재생화면을 비교해 주시기 바람.

- 디지털포렌식센터 □□□ □□: ('▶▶▶▶▶'를 연결하여 실시간 방송 중인 EBS 채널을 보여줌)

- 성원영 전문위원: ('▶▶▶▶▶'에서 제공 중인 ㉠㉠㉠ 실시간 방송과 ㉠㉠㉠ 공식 홈페이지에서 제공 중인 실시간 방송을 비교해서 보여주면서)'▶▶▶▶▶'에서 제공 중인 ㉠㉠㉠ 실시간 방송과 ㉠㉠㉠ 공식 홈페이지에서 제공 중인 실시간 방송 간의 시차가 발생하지만 동일한 방송임.

- C 위원: 서버는 중국에 있는 것인지?
- 성원영 전문위원: 서버는 중국에 있다고 추측됨. 다른 채널에 접속해 주시기 바람.
- 디지털포렌식센터 ○○○○ ○○: (‘▲▲▲’, ‘□□□□’, △△ △△△ 등의 채널에 접속해서 방송되는 화면을 보여줌)
- 성원영 전문위원: 해당 채널이 정상적으로 공중에 이용에 제공 중이며 미국 ‘■■■■’의 경우 ‘▼▼▼▼’에서 국내 방송사업권을 갖고 있음.
VOD로 제공되고 있는 콘텐츠를 확인해보도록 하겠음.
- 디지털포렌식센터 ○○○○ ○○: (‘▶▶ ▶▶▶’ 내에 VOD 서비스 접속해서 시연함)
- 성원영 전문위원: 중국, 일본 등 다양한 국가의 VOD 콘텐츠가 제공되고 있음. 국내에 많은 이용자가 존재함.
해당 안전에 관해 국제적인 사법 공조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B 위원: 해당 기기를 구매한다면 이용자가 별도의 넷플릭스 등 OTT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생각됨.
- C 위원: 국내 이용자는 스트리밍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해당 기기를 구매하는 것인지?
- 성원영 전문위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음.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 거주하는 교포들이 해당 기기를 많이 이용한다고 함.

- A 위원: 해당 기술을 막을 수 없다면 기술적 보호조치를 강화해서 수신료 징수를 강화하는 방법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됨.
‘○○○’에서 위 관련 사항을 인지해서 자문하였기에 국제방송협회의 회와 같은 권리신탁단체를 통해 송신료를 징수하는 방안을 제시한 적이 있음.
- 성원영 전문위원: 해당 기기의 경우 기술적 보호조치와 관련된 복호화 암호화와는 관계가 없음. 합법적으로 신호를 받아서 재송출하였기 때문에 방송사업자의 동시중계방송권을 침해한 사안임.
- B 위원: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심의대상 게시물을 ‘불법복제물등’에 해당한다고 서술하고 있는데 국내에서는 ‘불법복제물등’에 대한 개념이 명확하게 적립되지 않음. 그렇다면, 심의대상 게시물이 ‘저작권 침해 정보’로서 ‘불법복제물등’에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가 될 것임.
- 성원영 전문위원: 해당 안전과 유사한 기기에 관해 서울고등법원은 “피고는 이 사건 기기의 판매를 통해 이 사건 기기 제작자 또는 구매자의 침해행위를 방조한다는 점을 알았거나 알고 있으면서도 이 사건 기기를 판매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에게 원고들의 저작권 침해에 대한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판시한 바 있음. 즉 해당 판결문에서는 피고인을 정범으로 보았는데 이에 피고측의 변호사는 “피고인은 기계만 판매하였을 뿐이고 기계 안에는 불법복제물이 담겨져 있지는 않다.” 라고 변론하였음.

- D 위원: 해당 판결은 기계를 판매한 사안이고 심의대상 안건은 기계를 판매하는 게시물이 '불법복제물등'에 해당하는지의 문제임.
- 성원영 전문위원: 위원님 말씀이 맞음. 본 건 기계를 판매하는 행위는 기기 구매자들의 침해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것으로 저작권 등 침해 방조에 해당하고 심의 대상 게시물은 침해를 방조하는 정보라고 볼 수 있다는 의견임.
- D 위원: 해당 기계를 판매하는 게시물일지라도 심의대상 게시물을 게시한 행위가 방조에 해당한다는 것은 다른 문제임.
- B 위원: 저작권법 제133조 불법 복제물의 수거·폐기 및 삭제 조항에 저작물 등의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하게 하기 위하여 제작된 기기·장치·정보 및 프로그램을 발견할 때에는 수거·폐기 또는 삭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음. 위 조항에 따라 심의대상 게시물을 '불법복제물등'에 포함을 시킬 수 있다고 가정하여 유추해석 가능함.
- 성원영 전문위원: 해당 기기의 경우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복호화에 해당되지는 않고 저작권법 제104조의4 제2호 혹은 제3호에 해당될 것임.
- B 위원: 해당 기기가 복호화를 하지 않을지라도 불법 스트리밍, 불법복제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기기와 관련된 정보를 게시하는 행위는 '불법복제물등'에 포함될 수 있다고 생각함.
최근 일본은 리치사이트의 경우 링크가 송신원 역할을 한다는 점을 근거로 불법정보로 보고 있음. 불법정보를 클릭하면 송신이 이루어지기 때문임. 이 부분을 우리 저작권법 내에 있는 표현에 대입하여

- 유추해석을 한다면 불법행위를 유발하는 기기와 관련한 정보를 '불법복제물등'으로 볼 수 있을 것임. 다만, '불법복제물등'에 관한 개념이 명확하지 않음으로 안건 축적을 통해 개념 정의를 내릴 필요가 있을 것임.
- C 위원: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는 바임. 추후 신임 위원님을 위해서라도 '불법복제물등'에 대한 정의를 문서로 정리하는 것이 필요함.
- D 위원: 위원님들 말씀의 방향성은 동의함. 다만, '불법복제물등'에 판매를 촉진하기 위한 게시물이 포함된다는 점은 의문임. 제133조 복제물의 수거·폐기 및 삭제 조항이 기기 자체를 수거해서 폐기한다는 의미지, 기기의 판매 게시물을 폐기한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생각함.
- B 위원: 제133조 복제물의 수거·폐기 및 삭제 조항에 따르면 삭제가 포함되어 있음. 즉 이 조항을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따라 '불법복제물등'에 관해서 어느 범위까지 포괄해야 할지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C 위원: 저작권법 제133조의2 1항은 "저작권이나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복제물 또는 정보,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하게 하는 프로그램 또는 정보..."라고 정하고 있는데 오늘 논의되고 있는 정보는 "저작권법이나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라는 구절에 해당할 것임. 즉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에 권리침해를 방조하는 정보가 포함된다고 생각함.
- D 위원: '불법복제물등'은 불법복제물 자체와 유사한 성질을 가진 것

을 '불법복제물등'이라고 표현하였을 것임. 링크로 연결되는 것은 링크로서 불법복제물에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것으로서 방조 행위로 보아 '불법복제물등'에 해당할 수 있을지 모르나, 민형사상으로 해당 기기의 판매 행위가 방조 행위에 해당한다고 해서 링크와 같이 심의대상 게시물을 '불법복제물등'에 포함해야 한다는 것은 법리적으로 다소 어색하다고 생각됨.

- C 위원: 링크를 '불법복제물등'에 포함시킨 이유는 '불법복제물등'에 방조행위가 포함된다고 보고 방조행위의 1태양이 링크라고 보았기 때문임. 고등법원 판결도 링크를 저작권 침해 방조 행위의 일환으로 보았음. 해당 심의안건도 마찬가지로 판매행위를 방조로 보았으므로 판매 목적으로 게시한 글 또한 방조 행위의 1태양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함.

- 성원영 전문위원: '불법복제물등'에 해당되는 것이 대표적으로 링크이며, 그 밖에 댓글을 남기면 밀녹 파일을 제공하겠다는 게시물 등이 포함될 것임.

- B 위원: 미국 저작권법의 512조는 사후에 검색 OSP 관련하여 Material이라는 단어를 이용하고 있는데 이 단어는 우리나라 저작권법의 정보로 해석이 되고 있음.

즉 '정보'의 용어 해석 문제에 관해서 심의위원회에서 어디까지 정보에 포함시킬 것인지 정리해야 할 것임.

- 김경숙 분과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모니터링 자료, 심의대상 게시물,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바탕으로 안전번호 제2020-74995호~75014호에 대해 의결해주시기 바람.

- C 위원: 저작권 침해 정보로서 시정권고의 필요성 및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되므로 시정권고를 가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함.

- A 위원: 심의대상 게시물은 저작권을 침해하는 정보로서 시정권고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점, 불법 스트리밍 기기 판매자 및 구매희망자들에게 저작권법 준수를 안내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시정을 권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함.

- B 위원: 기기 판매자가 기기 제작자 또는 구매자의 침해행위를 알고 있으면서도 본 건 기기를 판매하는 행위는 방송사업자의 저작권 침해 및 기기 구매자들의 복제권 침해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것으로 저작권 등 침해 방조에 해당하여 시정권고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가결 의견임.

- D 위원: 심의대상 게시물이 '불법복제물등'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관건임. TV 패드 사건에서 그 판매행위를 저작권침해 방조행위로 보았다고 하더라도 그 판매를 촉진하기 위한 게시물 자체를 방조행위로 판단한 것은 아닌 점, '불법복제물등'이라는 문언상 의미는 시정권고 대상물 자체가 불법복제물 침해와 직접성을 가지는 것에 한정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시정권고의 필요성 또는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결 의견임.

- 김경숙 분과위원장: 안전번호 제2020-74995호~75014호는 가결 3명, 부결 1명으로 의견이 나뉘었음.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이 가결 의견이므로 안전번호 제2020-74995호~75014호는 게시물에 대해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는 것으로 가결함.

- 성원영 전문위원: (불법복제물 제공화면, 파일 다운로드 화면, 불법복제물 재생화면을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0-75015호~76122호는 모두 불법 복제한 영상물, 음악, 컴퓨터 프로그램, 만화를 웹하드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임. 그중 일부 안건을 설명하겠음.

(방송 '나만 믿고 따라와, 도시어부 2 : 대항해 시대' 관련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0-75114호는 웹하드에서 해당 방송물 1화를 88 포인트에 판매한 사안임. 이덕화 이경규가 출연하였음. 현재 30회까지 방영되었으며, 30회 시청률은 3.3%를 기록함.

(영화 '사라진 시간' 관련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0-75187호는 웹하드에서 해당 영화를 186 포인트에 판매한 사안임. 조진웅 배수빈 등이 출연하였으며 배우 정진영의 감독 데뷔작임. 2020. 6. 18. 개봉하였으며 현재 상영 중임.

(영화 '에베레스트' 관련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0-75204호는 오경 장쓰이 등이 출연한 중국 영화로 중국의 에베레스트 등반대의 실화를 바탕으로 제작되었음. 중국에서는 2019. 9. 30. 개봉, 국내에서는 2020. 7. 22. 개봉 예정인데 벌써 불법복제물로 웹하드에서 310포인트에 판매 중임.

(방송 '애프터 라이프 앵그리맨' 관련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0-75617호는 넷플릭스가 권리자인 블랙코미디 방송으로 웹하드에서 420포인트에 판매 중임.

(영화 '침입자' 관련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0-75657호는 멤버 7명의 공개 밴드에서 해당 영화를 무료로 제공한 사안임. 밴드명은 '영화관'임. 송지효, 김무열 등이 출연하였으며 2020. 6. 4. 개봉하였음. 현재 상영 중임.

(영화 '초미의 관심사' 관련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0-75688호는 해당 영화를 '☐☐☐☐☐☐ ☐☐☐'의 밴드에서 무료로 제공

한 사안임. 공개 밴드이며 멤버수는 2명임. 2020. 5. 24. 개봉하였으며 현재 상영 중임.

(프로그램 'Adobe illustrator CC' 관련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0-75983호는 웹하드에서 해당 소프트웨어를 200 포인트에 판매한 사안임. 권리자는 'Adobe System Inc'이며, 월 24,000원에 이용가능함.

(음악 'Into the I-LAND' 관련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0-76093호는 가수 아이유가 실연한 음악으로 웹하드에서 해당 음악을 포함한 100곡을 90 포인트에 판매하고 있는 사안임. 방시혁, 송재경, 이스란 등이 작곡, 작사에 참여함. 해당 음악은 '엠넷'에서 방영 중인 빅히트 보이그룹 서바이벌 프로그램 'I-LAND'의 시그널 송임.

- B 위원: 위원님들께서는 심의안건을 확인하시어 안건번호 제2020-75015호~76122호에 대해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 B 위원, C 위원, A 위원, D 위원: (심의안건과 증거자료를 확인하면서)안건번호 제2020-75015호~76122호는 모두 불법복제물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으로 모두 시정권고의 필요성 및 타당성이 인정되므로 가결 의견임.

- 김경숙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안건번호 제2020-75015호~76122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고, 나머지 게시물에 대해서는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경고의 시정권고를 하는 것으로 가결함.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는 아래와 같이 의결함)

“안전번호 제2020-74994호는 부결하고 그 밖에 안전번호 제2020-74995호~75014호~76122호는 불법복제물등의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그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가결함.

4. 폐회 선언

- o 김경숙 분과위원장이 제148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폐회를 선언함.

2020년 제148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이
상기와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20. 7. 29.

분과위원장 김경숙

위원 박성호

위원 박정인

위원 오영주